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분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기업경영 지원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및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의 정원 14명(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3. 11. 22. ~ 1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688”을 “685”로 하고, 일반직 계 “687”을 “68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77”을 “67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48”을 “1,434”로 하고, 일반직 계 “1,448”을 “1,43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44”를 “1,43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계청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과 통계청 소속기관의 정원 14명(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88</u>	<u>685</u>	-3
·	·	·	
·	·	·	
일반직 계	<u>687</u>	<u>684</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77</u>	<u>674</u>	-3
·	·	·	

[별표 3]

통계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448</u>	<u>1,434</u>	-14
일반직 계	<u>1,448</u>	<u>1,434</u>	-14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444</u>	<u>1,430</u>	-14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32